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발 대상기관 변경〉

■ 황운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22호)

2025.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운하 · 정춘생 · 강경숙 · 김재원 · 장경태 · 김선민
한창민 · 차규근 · 박상혁 · 김준형 · 이해민 · 박은정
백선희 · 서왕진 의원(14인)

2. 제 안 일 : 2025. 8. 12.

3. 회 부 일 : 2025. 8. 13.

※ 의안번호 : 121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사’에서 ‘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로 변경하고, 처분결과 보고자를 ‘검찰총장’에서 ‘경찰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고발) ① ~ ③ (생략)	제15조(고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u>검사</u> 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u>검찰총장</u> 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 ----- <u>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u> ----- ----- ----- <u>경찰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u> -----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이라 함) 제15조¹⁾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제12조), 국회모욕의 죄(제13조) 또는 위증 등의 죄(제

1)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 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4조제1항 본문)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하고,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증인·감정인 등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고발하는 경우 본회의는 의장 명의로, 위원회는 위원장 명의²⁾로 검찰총장에게 고발(고발장 제출)하며, 검찰총장으로부터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있음.

한편, 2020년 2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2021. 1. 1. 시행)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 한정되었으며,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권³⁾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어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지니게 되었음.

그런데,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의 죄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아니하나,⁴⁾ 국회증언감정법에서 불출석 등의 죄 등을 ‘검사’에게

2)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음.

3) 「형사소송법」 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4)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

고발하도록 하고 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나목⁵⁾에서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로 명시하고 있어, 국회가 검사(검찰)에게 고발하면 검사가 수사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⁶⁾⁷⁾

또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기 위하여

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5)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죄

가. 사무의 공정을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범죄

다.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

2. 경제범죄: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가.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죄

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6) 법무부는 2020년 개정된 「검찰청법」의 취지가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이나 수사의뢰하도록 규정된 개별 법률의 효력을 무효화하거나 그보다 우선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로서 개별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석된다는 입장으로, 개별 법률에 따른 고발을 접수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시행령에 명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법무부 보도자료(2022. 8. 1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 입법예고”, pp.10~11 ; 법무부 보도자료(2022. 8. 1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Q&A”, p.13).

7) 국회운영위원회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10명에 대하여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로 2024. 12. 24. 검찰(검찰총장)에 고발하였음.

참고로, 각 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고 있음.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안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여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검찰의 처분결과 보고와 별개로 경찰 역시 경찰 단계에서의 처분결과를 위원회에 전달하고 있음(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2024, p.823).

2020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이 제정(2020. 7. 15. 시행)되었음.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와 ②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판사·검사·경찰공무원(경무관 이상) 등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제1항의 죄(위증 등의 죄)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포함되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의 수사 대상에 해당함.⁸⁾

8) 공수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아.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차.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카. 검찰총장

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파. 판사 및 검사

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거. 장성급 장교

너.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더.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제정에 따른 수사처 설립을 반영하는 것에서 나아가,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수사절차법안」,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검사’에서 ‘사법경찰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처분결과 보고자를 ‘검찰총장’에서 ‘경찰청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⁹⁾

다.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9) 의결 전제 법률안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공소청법안	3354	박은정의원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전환하며,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3층 구조를 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2층 구조로 변경
2	수사절차법안	3348	차규근의원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일부 규정을 이동시키고, “심야조사 제한”, “압수·수색의 심리” 등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추가하여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
3	중대범죄 수사청법안	3346	황운하의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대형참사 등의 중대범죄와 이에 대한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며, 각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본부장이 원칙적으로 수사의 총책임자 역할을 수행
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355	차규근의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검사의 수사권한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정비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건의 의결 전제 법률안의 심사상황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참고로, 현행 제도를 전제로 고발 대상기관을 검찰 외에 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음.¹⁰⁾

문 의 처

02)6788-5017

10) 고발 대상기관 확대 관련 개정안 계류 현황

연 번	법률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379	이해식의원	검찰 외에 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
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798	이병진의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기관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154	박성준의원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